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60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교통안전법」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
- 나.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「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의 내용을 대신할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’가 구성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교통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사무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
- (5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해당없음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 : 의견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16.12.2 ~ 12.21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- (2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도 불임

※ 작성자 :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기훈 (☎ 2133 - 3354)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되어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「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의 내용을 대신할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’가 구성되어 발의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 :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행정6급 기훈 (☎2133-2470)